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특별공급 공통 자격요건

ARTERA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시,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인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청주시 및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 등)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